

두 가지 최저임금 인상 논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89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액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론이 신문지면에서 끊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론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확산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저임금 인상론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노동 시장 전체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고리라는 점과 최저임금 논의에 정부의 견해가 간접적으로(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통하여) 반영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대표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임기가 금년 4월 23일까지이다. 새로 추천된 위원 명단이 이미 기사로 실리기도 하였으나 새롭게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세간이 추측하는 시급 6천 원대의 최저임금액 인상을 결정하게 될지 궁금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이 9명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공 대표 가운데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정자로 나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중앙 최저임금심의회도 우리와 비슷하게 노사공 위원이 6명씩 구성되며, 최저임금액 심의

에서 주로 공익위원안이 제시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물론 이는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만큼 노사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보아야 한다. 일본의 2014년도 공익위원 명단을 보면, 전원이 대학교수인 것도 흥미로우며, 면면이 노동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호주의 Fair Work Australia에서는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판사(judge)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노사는 마치 증인처럼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이다.

호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호주는 최저임금액 결정 고시가 판결문 수준이다. 당시의 경제 상황, 노사의 의견 개진, 조사 결과 등과 함께 어떻게 최저임금 결정액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는지를 최저임금액 결정과 함께 자세히 보고한다.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 공익위원안이 어떠한 근거에서 도출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작성하였으면 한다. 최저임금액 심의에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익위원이 단순히 노사대표의 중재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의 제3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놀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성립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영토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를 때, 개성공단이 포함되고, 개성공단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만큼 한국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다는 논리는 비약일까? 앞으로 남북한 통일이 꿈같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한다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최근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회적 관심사이다. 북한이 2월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하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기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입주기업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두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번 호의 최저임금 특집은 흥미롭게도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국가로 구성이 되었다. 편집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2014년에 있었던 동북아노동포럼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역시 2014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뢰로 연구하였던 보고서를 발췌한 것이다. 이 특집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KLI**